

'기업'과 '기업'을 '연결'하다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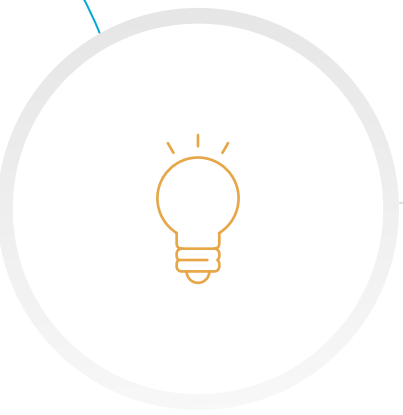
공동구매·공동판매·공동R&D



시험인증·공동마케팅

KBIZ 중소기업중앙회

인력양성·정보화



매출
향상
지원



단지조성

공동사업 지원자금

중소기업간 공동사업 수행을 통해
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
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적으로 조성하고 지원하는 민간자금입니다.



2021. 12.

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

- 조특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 :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% 법인세 공제
- 조특법 제100조의32 투자·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반영

2022. 12.

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'지정기부금' 손금 인정

- 법인세법 시행령(제39조제1항제2호다목)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 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반영 (기재부 고시)

2023. 12.

대·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특별지원에 '공동사업지원자금' 추가

- 공동사업지원자금도 대·중기·농어업협력재단과 동일하게 상생협력을 위해 운용되는 취지 감안 특별지원 항목에 추가

공동사업 개념 및 효과



공동사업은 기업활동 일부를 공동화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은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.

개별기업 차원에서 도입이 어려운 설비 및 시설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용할 경우, 투자비를 절감하고 기업운영상 원가절감 효과가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개별 중소기업 대비 수익성과 고용창출 효과 측면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.

[수익성] 개별 중소기업 대비,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수행 중소기업은 매출액영업이익률에서 17% 높은 수준



개별 중소기업
4.63%

17% ↑



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수행 중소기업
5.44%

[고용창출효과] 개별 중소기업 대비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수행 중소기업은 종업원수에서도 40.4% 높은 수준



개별 중소기업
15.6명

40.4% ↑



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수행 중소기업
21.9명

▶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**대안적 경제모델**입니다.

공동사업 추진 유형



중소기업간 공동사업은 추진 유형별로 집단화, 공동화, 협업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.

구분	사업 내용	추진 유형
집단화	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지역에 사업장과 부대시설을 집단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동단지조성
공동화	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고가의 생산시설, 연구개발시설, 환경오염방지시설, 물류창고,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 및 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동시험검사시설 공동폐수처리시설 공동물류창고 공동제품전시판매장
협업화	중소기업이 경영개선을 위해 기술개발(R&D), 상표개발, 원자재구매, 공동판매, 품질관리, 인력양성, 수출협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동R&D 공동상표 공동구매 공동판매 인력양성 정보화 공동마케팅(국내외)

출연 시 세제 혜택



[세제 혜택]

- ①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(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)
- ②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(조특법 제100조의 32, 제2호 비투자형)
- ③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(조특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)

[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국법인]

과세표준	세제혜택 효과(%)					
	①	②	③*	①&②&③		
				①+②+③	a**	소계
2억원이하	9.9	66.0	8.0	83.9	3.3	87.2
2억원초과 200억원이하	20.9	66.0	8.0	94.9	3.3	98.2
200억원초과 3천억원이하	23.1	66.0	8.0	97.1	3.3	100.4
3천억원 초과	26.4	66.0	8.0	100.4	-	100.4

예시) 과세표준 200억원 기업이 5억원 출연시 491백만원(98.2%)까지 세제혜택
 *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5조제1항에 따라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감면세액의 20%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게 되어 이에 대한 실질 세제혜택은 8%(10%-(10%×20%))임
 ** ②세제산출시 ①에 따른 기업소득 감소효과분(15%×20%=3%)이며, 과세표준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, 기업소득을 3천억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없음

[중소기업협동조합]

과세표준	세제혜택 효과(%)					
	①	②	③*	①&②&③		
				①+②+③	a	소계
20억원이하	9.9	-	-	9.9	-	9.9
20억원초과	13.2	-	-	13.2	-	13.2

*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
 ② 제1항 각호의 법인(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)에는 제8조의3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[위 이외의 법인(중소기업 등)]

과세표준	세제혜택 효과(%)					
	①	②	③*	①&②&③		
				①+②+③	a	소계
2억원이하	9.9	-	8.0	17.9	-	17.9
2억원초과 200억원이하	20.9	-	8.0	28.9	-	28.9
200억원초과 3천억원이하	23.1	-	8.0	31.1	-	31.1
3천억원 초과	26.4	-	8.0	34.4	-	34.4

*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5조제1항에 따라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감면세액의 20%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실질세혜택은 8%(10%-(10%×20%))임

세제 혜택 관련 법령



01. 지정기부금 손금인정

「법인세법」 제24조(기부금의 손금불산입)

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(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)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,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1. 사회복지·문화·예술·교육·종교·자선·학술 등 **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**(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

02. 법인세 공제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조의3(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)

① 내국법인이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또는 「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.

4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106조제8항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

03. 투자·상생협력 촉진세제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시행령 제100조의32(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)

⑭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에서 “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해당 금액이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.

1.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 그 **출연금**

[출연신청서]

[법인 정보]

*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실 주소로 작성해 주십시오.

법인명		대표자명	
사업자번호		전화번호	
주소			

[담당자 정보]

*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실 이메일 주소로 작성해 주십시오.

성명		이메일	
유선전화		핸드폰	

[출연 정보]

출연 금액	원	출연 예정일	년	월	일
출연 계좌	221-449844-04-747 기업은행 예금주 중소기업중앙회				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[필수]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 : 출연약정, 출연자예우, 기부금 영수증발급, 관련사업참여, 각종 서비스 제공
-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공통사항
(필수) 법인명, 대표자명, 사업자번호, 대표자핸드폰, 담당자명, 이메일, 유선전화, 핸드폰
-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: 최대 10년,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즉시파기
-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거부시, 출연약정 및 예부, 세제혜택등 일부서비스제공 불가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

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 [필수]

- 기부금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·위탁합니다.

제공 받는 자	이용목적	제공 항목	제공 기간
국세청	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보관 의무	법인명, 사업자번호 기부금액	발급한 날로부터 5년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

법인명 :

(직인날인)

년 월 일

중소기업중앙회장 귀중

* 출연의향서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[www.kbiz.or.kr → 지원사업 → 공동사업지원자금 → 출연하기]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☎ 문의처 :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 02-2124-3220~3224